

# 창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

박봉수 / 세무회계사

## 가.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

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세금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.

### 1) 소득세

#### 가)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?

-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.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원가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.

$$\text{소득금액} = \text{연간 총수입금액} - \text{필요경비}$$

- 세율은 9%에서 36%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.

주관기관 유형	세 율	누진공제액
1,000만원 이하	9%	0
1,000만원 초과	18%	900,000
4,000만원 초과	27%	4,500,000
8,000만원 초과	36%	11,700,000

※ 2005년 귀속 소득세율은 1%인하 되었습니다.

#### 나) 소득세 신고방법

- 소득세는 사업자가 매년 1.1부터 12.31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.1~5.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가 장부에 의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.

## 2) 부가가치세

#### 가)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?

- 부가가치세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,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.
-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진 소득(이익)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
-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가져야 할 소득에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.

#### 나) 부가가치세 신고방법

- 매출세액(공급가액×10%)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.

$$\text{부가가치세} = \text{공급가액} \times 10\% - \text{매입세액}$$

-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 · 납부합니다.

구 분	제 1 기		제 2 기	
	신고사항	신고기간	신고사항	신고기간
확정신고	1.1~6.30 실적	7.1~7.25	7.1~12.31 실적	다음해 1.1~1.25

## 3) 원천징수하는 세금

#### 가) 원천징수란 무엇인가?

-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(원천징수의무자)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(납세의무자)으로부터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입니다.

나)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.



## 나. 법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

법인은 개인의 소득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원천징수는 개인 사업자와 같습니다.

### 1)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

- 법인사업자는 매출세액(공급가액×10%)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.

$$\text{부가가치세} = \text{공급가액} \times 10\% - \text{매입세액}$$

-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신고·납부합니다.

구 분	제 1 기		제 2 기	
	신고사항	신고기간	신고사항	신고기간
예정신고	4.1~6.30 실적	4.1~4.25	7.1~9.30 실적	10.1~10.25
확정신고	4.1~6.30 실적	7.1~7.25	10.1~12.31 실적	다음해 1.1~1.25

### 2) 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?

-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.
-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
$$\text{각사업연도 소득} = \text{총익금} - \text{총손금}$$

- 익금 :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액 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금액, 자산의 평가차익,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도 익금에 포함됩니다.
- 손금 : 제품의 원가 및 인건비 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,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며 세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특정 손금이 있습니다.

### 3) 법인세 신고방법

- 법인세 신고기한
  -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내 『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』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하여야 할 서류
  -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
  -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결손금처리계산서)
  - 세무조정계산서
  - 기타 부속서류
- 법인세의 납부
  - 법인세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을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

## 다. 주요 세무일정

- 1) 2월 : 원천징수세액 납부(10일), 지급조서제출(28일)
  - 2) 3월 : 원천징수세액 납부(10일),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(1일)
- 참고문헌 (국세청 발간 “중소·창업기업이 알아야 할 세금”)

### 박봉수 세무회계사무소

주 소 광주 서구 치평동 1187케이원오피스타운 8층 802호  
 전 화 062) 383-3600    팩 스 062) 375-6600  
 H. P. 016-613-7511    이메일 Pbstax@hanmail.net